

# 강원도립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3-02-25 규정 제316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강원도립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6.4.2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관리 및 조정, 계획,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관련 부서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시설장비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4.2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교직원이나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도 있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공간의 공공 개념 원칙 하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합리적인 공간배치 및 활용
2. 공간사용에 관한 조정 및 용도, 구조 변경사용 승인
3. 공간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각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간의 배정,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간의 용도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간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증축 공간의 용도 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행정부서 및 보직자 업무공간 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결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 공간 사용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변경요청 도면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요청 부서가 직제상의 단위부서가 아닌 경우는 업무상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요청사항을 발의한다.

② 요청안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상호 관련되는 때에는 관련 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전결사항의 조건에 따라 결재를 받은 후 요청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3. 3. 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